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중 이 없 는 행 정 구 현 을 위 한 5 개
법 령 의 일 부 개 정 에 관 한
대 통 령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기획재정부 등 4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등록증 원본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3. ~ 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령안

제1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가입한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를 시·도
지사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8조제1항 후단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후단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2제6항제2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나목 중 “원본”을 “원본(전

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나목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으로 한다.

제5조(「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원본”을 각각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①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	2. ----- ----- ----- ----- ----- 원 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가입한 처리이행보증보험증서를 시·도지사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

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 ----- ----- ----- ----- ----- ----- ----- ----- ----- ----- ----- . ----- ----- 원 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u>그 전자문서를 말한다</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 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록)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u>	2. <u>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 (생략)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생략) ③ (생략)	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 <u>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	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u>원본</u> 2. (생략) ③ (생략)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u>원본</u> ⑦ (생략)	----- ----- -----. 1. ----- -- <u>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u> ⑦ (현행과 같음)
---	---

행정심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재결의 결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 고, 결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 한다.	제31조(재결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 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u> <u>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 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44) 215 - 443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6396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7814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연 락 처	(02) 2100 - 2533